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9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가중처벌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1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의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의적·차별적인 범죄를 막기엔 역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등).

Ⅲ. 검토의견

1.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가중처벌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 제43조¹⁾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대하여 형²⁾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09조의2 신설),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임(안 제109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벌칙) ① (생 략)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	② -----제43조(피해자가 제109조의2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 ----- ----- -----. <u>제109조의2(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시 가중처벌)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09조제1항³⁾은 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국적,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음.⁴⁾

그러나 최근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⁵⁾ 악의적인

3)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2025.7.

임금채불 사업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이에 개정안은 판단능력의 제약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채불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여 명시적인 처벌 의사와 다르게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09조의2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임금 채불 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하여만 별도로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별법상 형의 가중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⁶⁾ ② 경제범의 경우에 범죄로 획득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⁷⁾ ③ 보호·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을 상대로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포통장’ 만들어 장애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한 악의적 채불 사업주 구속”, 2025.3.20.

6)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

죄를 범한 경우⁸⁾ 등에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음.

둘째, 안 제109조제2항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죄는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형사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합의에 대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체불청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⁹⁾

반의사불벌 조항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형사처벌만으로는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청산의 촉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약자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8)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9) 체불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분쟁이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민사절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시간적·비용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체불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임. 그런데 임금체불을 예외 없이 처벌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여지가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은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촉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임. (송승은, (2023).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30(1), 327-358. 참고)

것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위반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의 상황은 법 제36조·제44조·제44조의2 등 다양한 양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제43조(임금 지급) 외에도, 제36조(금품 청산),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하도급 근로자 등 제44조 또는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의 피해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정화하는 법으로, 개정안과 같은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피성년후견인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체불피해자는 양형기준 등을 통해 고려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

참고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23.7.1.)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급여법 제44조제1호·제2호(퇴직급여 미지급), 파견법 제43조제3호, 제34조제3항(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19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2월~2년 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